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모경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7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모경종·박해철·복기왕

주철현 · 허종식 · 김한규

임미애 · 윤건영 · 이광희

최민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독일 노동경제연구소(Institute of Labor Economics)가 오스트리아의 육아휴직 제도 사례를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, 남성 근로자의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보다 제도의 유연성이 더 필요하다고 밝혀지는 등 육아휴직 사용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에서는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한다거나, 조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음.

그런데 우리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고, 육아휴직의 대상도 부모로 한정하고 있음.

이에 육아휴직을 근로자 개별 상황에 맞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고, 그 대상을 조부모로 확대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9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"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를 "자녀 또는 손자녀(입양한 자녀 또는 손자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

제19조의4제1항 전단 중 "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"를 "나누어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 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 니한다"를 "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" 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임 제19조(육아휴직) ① -----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 ----자녀 또는 손자녀(입양한 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 자녀 또는 손자녀를 포함한다. 위하여 휴직(이하 "육아휴직"이 이하 같다)-----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~ ⑥ (생 략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9조의4(육아휴직과 육아기 근 제19조의4(육아휴직과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① 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① ------나누어---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 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 -----나누어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 <u>사용하는</u> 1회의 기간은 30일 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 이상이 되어야 한다. 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 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